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상복합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e모델하우스(http://sujain-eco.co.kr) 및 사전예약제 운영안내
-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견본주택은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e모델하우스(http://sujain-eco.co.kr) 및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함.
-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운영중이며, 별도 예약없이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양 홈페이지(http://sujain-eco.co.kr)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 사전예약제 안내
- 본 아파트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하신 분들만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안심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제한 등으로 더욱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644-1007)를 운영할 계획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 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2023.05.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 07. 1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건축물은 시행된 「건축법」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2021-건축과-신축허가-5) 2021. 7. 30. 허가 완료**

■ **본 아파트는 주거시설과 주거형 업무시설(오피스텔), 상업시설이 복합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안내**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리앤프로퍼티,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이며, 관련 사업 특수성을 서술한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 덕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07. 14.) 현재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전주시 고시」 제2018-40호에 의거하여 **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2. 07. 14. 이전 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의3호,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ujain-eco.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전매 포함)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됩니다.「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이에 본 아파트 계약체결(전매 포함)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인지세법」 제8조 및「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 (공급계약서 등)에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인지세 가산세는 납부기한 이후 3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 분양권 전매 금지

-「주택법」 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 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1순위	2순위			
일 정	**2023. 07. 24.(월)**	**2023. 07. 25.(화)**	**2023. 07. 26.(수)**	**2023. 08. 01.(화)**	**2023. 08. 03.(목) ~ 2023. 08. 12.(토)**	**2023. 08. 14(월) ~ 2023. 08. 17(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접수 (10:00~16:00)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 17:00)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구비서류 등을 지참(당첨자만 해당) ■ 구비서류는 분양 홈페이지 참고 ■ 서류심사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6)
					※ 사전심사서류제출 및 계약은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청 건축과 – 23581호(2023. 07. 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315번지 (전주에코시티 주상3BL)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8층, 2개동 총 268세대 [특별공급 158세대(기관추천 26세대 다자녀가구 26세대, 신혼부부 48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5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관계자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전염병 등)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음.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312	01	84.9779A	84A	84.9779	30.0035	114.9814	64.6571	179.6385	22.2658	45	5	5	8	1	8	27	18	1
		02	84.9922B	84B	84.9922	29.4868	114.4790	64.6680	179.1470	22.2695	178	16	16	32	6	34	104	74	4
		03	84.9834C	84C	84.9834	30.2094	115.1928	64.6612	179.8540	22.2672	45	5	5	8	1	8	27	18	1
	합 계										268	26	26	48	8	50	158	110	6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전용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시설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평 = ㎡ x 0.3025 또는 ㎡ ÷ 3.3058)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표기 (주택형)	동구분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 (입주지정기간 내)
								2024-01-16	2024-07-16	2025-02-16	2025-09-16	2026-02-16	2026-07-16	
84A (84.9779A)	101동(4호) (남서향)	3층	1	85,861,400	297,638,600	383,50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115,050,000
		4~5층	2	85,861,400	312,938,600	398,80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119,640,000
		6~10층	5	85,861,400	328,138,600	414,0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24,200,000
		11~15층	5	85,861,400	341,238,600	427,10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128,130,000
		16~23층	8	85,861,400	354,338,600	440,200,000	44,020,000	44,020,000	44,020,000	44,020,000	44,020,000	44,020,000	44,020,000	132,060,000
		25~30층	6	85,861,400	358,638,600	444,50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133,350,000
		31~36층	6	85,861,400	363,038,600	448,90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134,670,000
		37~42층	6	85,861,400	367,438,600	453,30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135,990,000
		43~48층	6	85,861,400	371,738,600	457,60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137,280,000
84B (84.9922B)	101동3호) 102동(1호, 2호) (남서향)	3층	3	85,875,600	294,224,400	380,10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114,030,000
		4~5층	6	85,875,600	309,424,400	395,300,000	39,530,000	39,530,000	39,530,000	39,530,000	39,530,000	39,530,000	39,530,000	118,590,000
		6~10층	15	85,875,600	324,524,400	410,40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123,120,000
		11~15층	15	85,875,600	337,424,400	423,30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126,990,000
		16~23층	24	85,875,600	350,424,400	436,300,000	43,630,000	43,630,000	43,630,000	43,630,000	43,630,000	43,630,000	43,630,000	130,890,000
		25~30층	18	85,875,600	354,724,400	440,60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132,180,000
		31~36층	18	85,875,600	359,024,400	444,900,000	44,490,000	44,490,000	44,490,000	44,490,000	44,490,000	44,490,000	44,490,000	133,470,000
		37~42층	18	85,875,600	363,424,400	449,30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134,790,000
		43~48층	16	85,875,600	367,724,400	453,600,000	45,360,000	45,360,000	45,360,000	45,360,000	45,360,000	45,360,000	45,360,000	136,080,000
	101동(2호) (남동향)	3층	1	85,875,600	286,624,400	372,50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111,750,000
		4~5층	2	85,875,600	301,424,400	387,300,000	38,730,000	38,730,000	38,730,000	38,730,000	38,730,000	38,730,000	38,730,000	116,190,000
		6~10층	5	85,875,600	316,324,400	402,200,000	40,220,000	40,220,000	40,220,000	40,220,000	40,220,000	40,220,000	40,220,000	120,660,000
		11~15층	5	85,875,600	329,024,400	414,90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124,470,000
		16~23층	8	85,875,600	341,724,400	427,60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128,280,000
		25~30층	6	85,875,600	345,924,400	431,80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129,540,000
		31~36층	6	85,875,600	350,124,4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37~42층	6	85,875,600	354,424,400	440,30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132,090,000
		43~48층	6	85,875,600	358,624,400	444,50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133,350,000
84C (84.9834C)	101동 1호 (남동향)	3층	1	85,866,800	296,433,200	382,30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114,690,000
		4~5층	2	85,866,800	311,633,200	397,50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119,250,000
		6~10층	5	85,866,800	326,833,200	412,70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123,810,000
		11~15층	5	85,866,800	339,833,200	425,700,000	42,570,000	42,570,000	42,570,000	42,570,000	42,570,000	42,570,000	42,570,000	127,710,000
		16~23층	8	85,866,800	352,933,200	438,800,000	43,880,000	43,880,000	43,880,000	43,880,000	43,880,000	43,880,000	43,880,000	131,640,000
		25~30층	6	85,866,800	357,233,200	443,100,000	44,310,000	44,310,000	44,310,000	44,310,000	44,310,000	44,310,000	44,310,000	132,930,000
		31~36층	6	85,866,800	361,633,200	447,50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134,250,000
		37~42층	6	85,866,800	365,933,200	451,80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135,540,000
		43~48층	6	85,866,800	370,333,200	456,20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45,620,000	136,860,000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 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전주시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상기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공통 유의사항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납부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84B타입이 건립되어 있음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약식표기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 합계
	국가 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계					
84A	1	1	1	1	1	5	5	8	1	8	27
84B	3	3	3	4	3	16	16	32	6	34	104
84C	1	1	1	1	1	5	5	8	1	8	27
합 계	5	5	5	6	5	26	26	48	8	50	15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

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주시/전라북도)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6 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북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
- 장애인 : 전라북도청 장애인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7. 14.)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전라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전라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48**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 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 07. 14.	(해당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8**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자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50 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 07. 14.	(해당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유의사항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table>
<tr><td>신청자격</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7. 14.)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7. 14.) 현재 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전주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보다 우선함.</td></tr>
<tr><td>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td><td>
<table>
<tr><th>구분</th><th>순위</th><th>주택형</th><th>청약관련 신청자격</th></tr>
<tr><td rowspan="2">민영
주택</td><td>1순위</td><td>전 주택형</td><td>■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td></tr>
<tr><td>2순위</td><td>전 주택형</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td></tr>
</table>
</td></tr>
<tr><td>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td><td>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전주시/전라북도)</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r>
</table>
</td></tr>
<tr><td rowspan="3">청약시 유의사항</td><td>공통</td><td>•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td></tr>
<tr><td>1순위</td><td>• 전용면적 85㎡이하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td></tr>
<tr><td>2순위</td><td>•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으로 청약접수 함.</td></tr>
</table>

■ **청약신청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 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Ⅳ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 07. 2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견본주택 접수는 청보취약계층에 한함**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6 휴하우징 2층
일반공급	1순위	2023. 07. 25(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 07. 26(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2">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td><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td><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3. 08. 01.(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및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3년 08월 14일(월) ~ 08월 17일(목)** (10:00~17:00) • 장소 - 견본주택 (장소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6, 휴하우징 2층)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 됨.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 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 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정 및 당첨자 서류 확인 일정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 할 예정이며,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첨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 08. 01. ~ 2023. 08. 10.(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담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 08. 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60㎡초과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I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자격확인서류 제출 일정**

구분	내 용
제출기간	2023. 08. 03(목) ~ 2023. 08. 12.(토)(10:00~16:00)
대상	특별공급, 일반공급(1,2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장소	견본주택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6, 휴하우징 2층 ※ 자격확인 서류제출은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표1]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 구비서류(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1.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특별공급신청자)무주택서약서**
	○		2. 특별공급 확약서, 인터넷 청약 동의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 비치
	○		4.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청약자(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5. 신분증	청약자(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6.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청약자(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7. 출입국사실증명원	청약자(본인)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장이 정하여 산정하므로 해당서류는 제출 제외)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8.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9.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11.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12.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13. 복무확인서	청약자(본인)	•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이 명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		1. 해외체류 증빙서류	청약자(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2.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등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3.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4.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5.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생업, 학업 등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부동산 소유현황 등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1. 부동산소유현황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 소유에 따른 등기사항발급.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	3.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재산세 과세 내역서(건축물)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자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발급기관: 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	4. 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토지)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자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 발급기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축산업허가증 등 (부동산 자산 제외사항)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이면서, 농업인 및 농지 소유자 • 농업 ①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발급기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②해당 농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축산업 ①축산업 허가증 ②해당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초지) - 발급기관: 토지e음(www.eum.go.kr) > 토지이용계획 > 지번입력 > 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③해당 축산업 사업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	6.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부동산 자산 제외사항)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된 경우 등 제한을 받는 경우 ①해당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현장 사진 ③해당 토지이용계획 - 발급기관 : 토지e음(www.eum.go.kr) > 토지이용계획 > 지번입력 > 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 신규 분양권 등(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청약자(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 특별공급	○		1. 다자녀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	2.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3.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4.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 만 18세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6.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로 한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제출 불가)
		○	7.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8.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1. 자격요건 확인서	청약자(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소득확인(견본주택 비치)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4.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2] 참조)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	5. 재직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6.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피부양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가구원수 포함여부 확인 필요시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사항)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8.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로 한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제출 불가)
		○	9.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1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11. 비사업자 확인각서	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1. 청약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청약자(본인)	• 견본주택 비치
	○		2.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5. 출입국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6. 출입국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table>
<tr><td rowspan="10">생애최초
특별공급</td><td>○</td><td></td><td>1. 자격요건 확인서</td><td>청약자(본인)</td><td>• 견본주택 비치</td></tr>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2. 혼인관계증명서(상세)</td><td>청약자(본인)</td><td>•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td></tr>
<tr><td>직계비속</td><td>•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td></tr>
<tr><td></td><td>○</td><td>3. 가족관계증명서(상세)</td><td>피부양 직계존속</td><td></td></tr>
<tr><td></td><td>○</td><td>4. 주민등록표초본</td><td>배우자 및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td><td>• 피부양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가구원수 포함여부 확인 필요시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사항)</td></tr>
<tr><td></td><td>○</td><td>5.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td><td>본인 또는
배우자</td><td>• 입양의 경우</td></tr>
<tr><td></td><td>○</td><td>6. 재직증명서</td><td></td><td>•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td></tr>
<tr><td>○</td><td></td><td>7.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td><td></td><td>•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td></tr>
<tr><td>○</td><td></td><td>8. 소득증빙</td><td>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td><td>• 청약 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1] 소득증빙서류 및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table>
<tr><th>구 분</th><th>서류구분</th><th>확인자격</th><th>비고
(소득세납부 인증서류)</th></tr>
<tr><td rowspan="2">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td><td>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td><td>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td><td rowspan="2">※아래 [표3] 참고</td></tr>
<tr><td>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td><td>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td></tr>
</table></td></tr>
<tr><td></td><td>○</td><td>9. 비사업자 확인각서</td><td>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td><td>• 비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td></tr>
<tr><td rowspan="6">일반공급
(가점제)</td><td></td><td>○</td><td>1. 주민등록(표)초본</td><td>피부양
직계존·비속</td><td>•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은 만30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td></tr>
<tr><td></td><td>○</td><td>2. 가족관계증명서</td><td>피부양
직계존속</td><td>•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td></tr>
<tr><td></td><td>○</td><td>3. 혼인관계증명서</td><td>본인</td><td>•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td></tr>
<tr><td></td><td>○</td><td>4. 혼인관계증명서</td><td>직계비속</td><td>•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td></tr>
<tr><td></td><td>○</td><td>5. 출입국 사실증명</td><td>피부양
직계존속</td><td>•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td></tr>
<tr><td></td><td>○</td><td>6. 출입국 사실증명</td><td>피부양
직계비속</td><td>•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td></tr>
</table>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1. 인감증명서	청약자(본인)	• 비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2. 인감도장	청약자(본인)	• 비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3. 위임장	청약자(본인)	• 비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4.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1. 무주택 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2. 당첨사실 소명서류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 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2]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본) ② 무실적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③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1)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 요망
※ 기본 제출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③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납부내역증명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서(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①홈텍스→②신고/납부 → ③세금신고 → ④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해당연도 내 환급 받지 못한자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직접납부자는 납부내역증명을 함께 발급하시기 바람.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⑤ 납부내역증명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세무서 ⑤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출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 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분양)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9.0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야여야 함.
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수도권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대상자	계약기간	계약장소	비고
특별공급, 일반공급(1,2순위) 당첨자	2023년 08월 14일(월) ~ 08월 17일(목) 3일간(10:00~17:00)	견본주택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6 휴하우징 2층	**※ 자격확인 서류제출은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진행 됨**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KB국민은행	393301-04-095475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1-501홍길동)
중도금 및 잔금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일반공급)	O		1. 계약금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O		2. 신분증	계약자(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통)
	O		3.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계약자(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O	4. 자격검증 서류	계약자(본인)	• 당첨 유형별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5. 추가 개별통지서류	계약자(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1. 위임장	계약자(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O		2.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인감도장	계약자(본인)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3.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본 제출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청약으로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의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판단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명단에서 제외 요청할 예정이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이후 청약통장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는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매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의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공급 받은 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사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시행위탁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이자 대납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사에서 대납해주며, 입주 시 납부된 이자를 시행수탁사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시행위탁사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시행위탁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정부의 관련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취급 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주택구입자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주시 시행위탁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보증수수료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함.(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전주시 덕진구는 비규제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Ⅶ 별도 계약 품목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 고
		계약시	2024-01-16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84A	6,843,000	1,000,000	1,000,000	4,843,000	계약시 공사부분 확인바람
84B	5,580,000	1,000,000	1,000,000	3,580,000	
84C	7,347,000	1,000,000	1,000,000	5,347,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393301-04-09546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계약체결시 무통장입금증 지참요망.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실외기실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발코니의 천장고가 낮아짐.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하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하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세대의 발코니 바닥이 높아짐.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발코니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좌측 또는 우측 세대가 확장세대일 경우 확장세대에 면한 측벽에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의 벽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세대의 유효면적이 감소함.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발코니 벽에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선홈통, 선홈통BOX 및 드레인의 위치는 실시공시 설비등 각종 배관의 배치 및 연결여건 및 현장의 여건에 따라 좌우반전배치, 위치이동 등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음.
- 비확장세대의 경우 천정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감지기, 환기디퓨저의 위치가 확장형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평면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세대의 경우 벽체에 설치되는 스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 사양, 전등회로가 확장형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평면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시 적용 사항

타입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비고
84A	비확장시 확장선에 맞게 발코니 샷시가 설치됨. 비확장 발코니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며, 발코니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음.	비확장시 확장선에 준하여 침실1 측면에 발코니 도어와 벽체가 설치되며 발코니 3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고 알파룸은 설치되지 않음. 비확장시 발코니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음	비확장시 확장선에 맞게 발코니 샷시가 설치되며 비확장 발코니 바닥은 타일로 마감됨. 비확장시 발코니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음.		비확장시 발코니 확장선이 맞게 벽체와 발코니 도어가 설치되며 다용도실은 실외에 설치됨.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며 외부창호는 설치되지 않음. 비확장시 주방의 크기, 싱크대 사이즈 등이 확장형에 비하여 작음. 비확장시 기본제공 싱크대는 소규모로 설치되며 냉장고장과 아일랜드는 설치되지 않음	
84B		비확장시 확장선에 준하여 침실1 측면에 발코니 도어와 벽체가 설치되며 발코니 3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고 드레스룸 공간이 확장형에 비해 작게 제공되며, 벽체 및 도어는 설치 되지 않음.. 비확장시 발코니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음			비확장시 주방의 크기는 동일하나 기본제공 싱크대는 소규모로 설치되며 냉장고장과 아일랜드는 설치되지 않음	
84C		비확장시 확장선에 준하여 침실1 측면에 발코니 도어와 벽체가 설치되며 발코니 3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고 드레스룸은 설치되지 않음. 비확장시 발코니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음			비확장시 발코니 확장선이 맞게 벽체와 발코니 도어가 설치되며 다용도실은 실외에 설치됨.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며 외부창호는 설치되지 않음. 비확장시 주방의 크기, 싱크대 사이즈 등이 작음. 비확장시 기본제공 싱크대는 소규모로 설치되며 냉장고장과 아일랜드는 설치되지 않음	

■ 추가 선택 품목(발코니 비 확장시 선택 불가한 항목 있으므로, 사전확인 바람)

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IoT UV NANO 기능 포함)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에어컨설치부위	제품명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전타입	1안	거실, 침실1	RNW0721C2UP(거실) RNW0321C2UP(침실1)	LG전자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2개소
	2안	거실, 침실1,2,3	RNW0721C2UP(거실) RNW0321C2UP(침실1) RNW0201C2UP(침실2,3)		**7,300,000**	730,000	730,000	5,840,000	4개소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에어컨(거실) 및 멀티형 벽걸이형(침실1,2,3)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매립형 냉매배관으로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거실) 및 벽걸이형(침실1,2,3,)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시에는 거실+침실1용과 침실2+침실3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형 기준의 매립형 냉매배관 적용으로 2대의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함.
- 시스템 에어컨 1안 선택시 거실+침실1은 시스템에어컨이 적용되며, 침실2+침실3는 추후 입주자가 멀티형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수 있는 매립형 냉매배관이 적용됨.
- 시스템에어컨 1안 선택시 거실, 침실1에, 2안 선택시 거실, 침실1,2,3에 별도의 냉매매립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실공간에 설치)
- 시스템 에어컨, 주방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냉매배관의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옵션1 선택시 침실 2,3 콘센트 설치됨)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은 견본주택용으로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과는 제품이 상이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음.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② 빌트인 가전

[단위:원,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품명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빌트인 오브제냉장고	전타입	BC1L1AA1(냉장)+BC1F1AA(냉동)+BC1K1AA1(김치)	LG전자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 확장시 선택가능
식기세척기		DUB22SB2	LG전자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 확장시 선택가능
인덕션		CEN-IF3A0NBA	쿠첸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전기오븐		NQ36A6555CK	삼성전자	**300,000**	30,000	30,000	24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 빌트인 오브제냉장고와 식기세척기는 비확장시 설치공간 확보문제로 인해 발코니 확장계약시에만 계약이 가능함
- 빌트인가전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오브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개별선택이 불가함
- 빌트인 오브제 냉장고 미선택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됨
- 빌트인 오브제 냉장고 도어는 색상을 지정하실 수 없으며 미스트베이지로 설치됨
- 상기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가구와의 이격거리(틈새)가 있음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시 가구도어로 설치되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용 콘센트도 미설치됨
- 마감자재 유상옵션 중 주방상판 및 벽체 여부에 따라 식기세척기 선택시 입면이 상이함
- 인덕션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되며, 인덕션용 콘센트도 미설치됨

③ 빌트인가구 및 마감자재

[단위:원,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품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현관중문	전타입	3연동 슬라이딩도어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견본주택 전시품목
주방 유리상부장	전타입	유리도어+조명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견본주택 전시품목 / 확장시 선택가능
침실1 드레스룸 특화	84A	벽판넬+시스템선반(일부 조명형)+화장대(조명형 은경 포함)+스타일러(LG)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 / 확장시 선택가능
	84C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침실1 쇼룸형 드레스룸	84A, 84C	슬라이딩 도어(지정유리)+벽판넬+시스템선반(일부 조명형)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 / 확장시 선택가능
	84B	벽체+가구도어(지정유리)+벽판넬 +시스템선반(일부 조명형)+화장대(조명형 은경 포함)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견본주택 전시품목 / 확장시 선택가능
침실1 알파룸 특화	84B	드레스룸형 [벽판넬+시스템선반(일부 조명형)+화장대(조명형 은경포함)+스타일러(LG)]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 / 확장시 선택가능
		서재형 [책상+책장(제작가구 / 일부 조명형 선반포함)]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견본주택 전시품목 / 확장시 선택가능
침실2 붙박이장	전타입	제작가구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견본주택 전시품목
침실3 붙박이장	전타입	제작가구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주방팬트리 시스템 선반	84A, 84C	시스템 선반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
	84B		800,000	80,000	80,000	640,000	견본주택 전시품목
복도팬트리	84A	벽체 + 가구도어 + 시스템 선반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 / 확장시 선택가능
광폭 마루	전타입	브러쉬 광폭마루 : 거실+주방+복도+침실1,2,3+팬트리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견본주택 전시품목 / 확장시 선택가능
세라믹 벽타일	전타입	세라믹 타일(중국산) : 거실+일부 복도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견본주택 전시품목 / 확장시 선택가능
간접조명	전타입	거실 천장 간접조명, 주방우물천장+간접조명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견본주택 전시품목 / 확장시 선택가능
주방 상판 및 벽체	84A, 84C	세라믹 (중국산)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 / 확장시 선택가능
	84B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견본주택 전시품목 / 확장시 선택가능
욕실 스타일 업	전타입	욕실1 : [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 페데스탈 일체형 세면기, 세면기수전, 욕조수전 [국산] 액세서리(수건걸이, 수건선반, 휴지걸이)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견본주택 전시품목
		욕실2 : [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 페데스탈 일체형 세면기, 세면기수전 [국산] 샤워수전, 액세서리(수건걸이, 휴지걸이)					

- 광폭마루, 세라믹 벽타일, 주방 유리상부장, 주방 상판 및 벽체, 간접조명, 침실1 드레스룸 특화, 침실1 쇼룸형 드레스룸, 침실1 알파룸 특화 및 복도팬트리 품목은 비확장시 설치공간 부재 및 개별단가 적용에 따른 판매가 상승으로 발코니 확장계약시에만 계약이 가능함
- 현관중문 설치로 인해 신발장의 크기, 현관디딤판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시 현관중문의 사양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 광폭마루의 사양은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루의 코어재(바디재)는 변경될 수 있음.
- 광폭마루 옵션 선택시 84A,C타입은 드레스룸이 포함되며 84B타입은 알파룸이 포함됨
- 광폭마루 옵션 선택시 주방가구 하부에는 설치되지 않음
- 세라믹 벽타일 미선택 시 거실에는 디자인월(590X1,200mm)로 설치되며, 나누기 부분에 측면이 노출될 수 있고 복도에는 거실벽지가 시공됨
- 세라믹 벽타일 미선택 시 거실 아트월 디자인월의 나누기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각 패턴은 상이할 수 있음
- 벽타일 세라믹의 이음새 위치 및 패턴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적용되는 복도의 위치가 상이함
- 주방 유리상부장 옵션은 일부 상부장(ON/OFF 스위치 제공)에 한하며, 미선택시 가구도어로 적용되고 조명은 미설치됨

- 주방 상판과 벽체의 세라믹의 이음새 위치 및 패턴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판 및 벽체 미선택 시 상판은 인조대리석(MMA), 벽은 타일(300X600)이 설치됨
- 간접조명 선택시 거실은 기존 우물천장내 간접조명이 설치되며, 주방에는 우물천장과 간접조명이 설치됨
- 간접조명 미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에는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설치되지 않으며 우물의 형태 및 사이즈는 변경되고 주방에는 우물천장과 간접조명이 설치되지 않음
- 침실1 드레스룸 특화 미선택 시 가구도어가 설치된 공간이 제공되며, 조명은 사각 매입 센서 등으로 설치되고 별도의 스위치는 설치되지 않음 (84B타입 제외)
- 침실1 드레스룸 특화 선택시 벽판넬이 설치되나 일부 벽면에는 벽지가 설치되며, 조명은 사각 매입 등으로 설치되고 별도의 스위치가 설치됨
- 침실1 알파룸 드레스룸형(84B타입) 미선택 시 도어가 설치된 공간이 제공되며, 조명은 침실2와 동일한 침실 등(LED30W), 네트워크 스위치가 설치됨
- 침실1 알파룸 서재형(84B타입) 선택시 일부 조명형 선반이 설치(ON/OFF 스위치 제공)되며, 조명은 침실2와 동일한 침실 등(LED30W), 네트워크 스위치가 설치됨
- 침실1 알파룸 드레스룸형(84B타입) 선택 시 벽판넬이 설치되나 일부 벽면에는 벽지가 설치되며, 조명은 침실등(LED30W)에서 사각 매입등(LED20W)으로 변경되며, 통신수구는 미설치됨
- 침실1 쇼룸형 드레스룸은 타입별(84A,C / 84B)로 구성 및 형태가 상이하오니 확인 바람
- 침실1 쇼룸형 드레스룸(84B타입) 선택 시 사각 매입등, 별도의 배선기구(스위치,콘센트)가 설치되며, 미선택시 설치되지 않음
- 침실1 쇼룸형 드레스룸(84B타입) 선택 시 일부 동(101동 3호라인 서측3층~20층 세대)은 창호사이즈가 상이하여 시스템 선반과 벽판넬 구성이 상이하게 설치됨
- 침실1 쇼룸형 드레스룸(84B타입) 미 선택시 드레스룸 벽체와 도어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1 벽지로 설치됨.
- 침실1 쇼룸형 드레스룸 선택여부에 따라 침실등 설치위치가 변경됨
- 침실1 쇼룸형 드레스룸 및 알파룸 옵션 선택에 따라 환기 디퓨저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중 84A, 84C타입의 침실1 드레스룸 특화와 84B타입의 알파룸 드레스룸형에는 스타일러 가전이 포함되어있으며 스타일러의 열림 방향은 우방향으로 설치됨
- 스타일러 가전은 LG가전(제품명 : S5MBC)으로 6벌(상의5벌, 하의1벌) 기준이며, 도어는 블랙틴트 미러임
- 스타일러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복도 팬트리(84A) 선택시 주방 팬트리와 같은 이동식 선반과 벽지로 설치되며, 팬트리와 마감재가 동일하게 적용됨
- 복도 팬트리(84A) 선택시 조명은 사각 매입 센서 등, 콘센트가 설치되며, 미선택시에는 원형 복도 등으로 변경되며 콘센트는 미설치, 거실 전등회로수가 변경됨
- 침실2 또는 침실3 붙박이장 선택 시 타입별, 실별에 따라 사이즈 및 입면,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시 침실2 붙박이장, 침실3 붙박이장 선택에 따라 내부 공간 협소하여 공간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전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붙박이장 선택시 붙박이장의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 침실2 붙박이장 선택 시 침실2, 3의 가변벽체 통합형 선택이 불가함
- 욕실 스타일업 옵션은 욕실1,2를 포함한 옵션으로 개별선택이 불가함
- 욕실 스타일업 옵션 미 선택시 욕실2에만 분리형 비데가 제공됨(옵션 선택시 욕실2에는 별도의 비데가 제공되지 않고 비데일체형 양변기가 설치됨)
- 욕실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욕실 기구와 기본 제공품목의 사양, 제조사, 마감재질 및 사이즈 등이 상이함

④ 태양열 차단필름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설치위치	업체명	비고
태양열 차단필름	84A, 84C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전창시공 ※ 설치 제외 위치: 실외기실, 대피공간, 침실1내창	후퍼옵틱 코리아	- / 확장시 선택가능
	84B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 태양열차단필름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계약이 가능함
- 실외기실, 발코니 내측창은 시공부분에서 제외되며, 태양열차단필름의 특성상 인공조명과의 간섭에 의한 야간 점등시 무지개현상이 생길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가구, 가전, 시스템에어컨, 태양열 차단필름)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4-01-16	입주시(입주지정 기간 내)	
별도 계약품목	10%	10%	80%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별도 계약품목	KB국민은행	393301-04-09546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함.
- 무통장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오입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지지 않음.

■ 단위세대 선택품목리스트(기타)

주택형	선택품목 (확장형)				세부내용	비고
전타입	침실2 / 침실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형 1	분리형	
				선택형 2	통합형	

▪ 가변형 벽체는 발코니확장시 선택가능하며, 통합형선택시 침실벽지는 침실3기준으로 설치됨
▪ 유상옵션 침실2 붙박이장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선택형 2(통합형)는 선택이 불가함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포함> 거실, 주방 / 식당, 복도, 침실 전체, 드레스룸(알파룸), 팬트리 <엔지니어드스톤 및 타일> 현관 <타일> 욕실(시멘트몰탈 포함), 발코니 / 다용도실(세탁실), 실외기실	바닥난방(욕실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욕실 및 발코니 / 다용도실 바닥방수, 배수슬리브, 우수, 배수, 선홈통, 하향식 피난구
2) 벽,천장	<벽> 벽지(초배지 포함) 및 벽체마감, 거실 아트월 디자인월, 주방타일, 욕실벽타일,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포함 <천장> 천장지, 반자돌림(몰딩 포함), 단천장(몰딩 등 마감일체)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 박스,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소방 화재용 감지기 세대환기설비(장비, 덕트, 디퓨져)
3) 조명기구, 배선기구	각 실 조명기구, 배선기구 일체(욕실 포함)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4) 욕실	<위생기구> 비데, 양변기, 세면기, 욕조, 욕조틀, 수전류 등 <욕실 인테리어> 타일, 천장재(천장틀, 배기휀 포함), 샤워부스, 잰다이, 액세서리, 욕실장,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일체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 배수 슬리브, 전기 및 통신 배관배선
5) 주방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주방상판, 가스쿡탑, 액세서리 일체 포함), 설비 수전류(수전 포함), 자동식소화기	설비배관, 소방관련 시설 전기 및 통신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6) 창호	문틀(상부 덧판, 문선 포함) 및 문짝(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포함, 하드웨어 포함)	목재 및 ABS도어(공문틀 포함)의 가틀 및 사춤, PVC 내부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실외기실 도어
7) 가구 및 기타사항	가구류 일체(신발장, 현관창고 도어 및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드레스룸 도어, 주방가구(상판 및 수납장 일체), 시스템선반(세탁실), 수전류 일체(발코니, 다용도실)	월패드,에어컨 매립배관(거실, 침실1,2,3), 완강기(3층세대)

■ 마이너스옵션금액

[단위:원]

주택형(㎡)	84A	84B	84C
금액	35,960,432	35,803,307	36,026,548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과 선택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 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 방수공사 .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Ⅷ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공통

당 아파트의 경우**(2021-건축과-신축허가-5) 2021. 7. 30.을 특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소수점 5째자리에서 절삭함), 연면적 및 전체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사업계획 구역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와 관련된 입주 지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체,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는 분양상담 시 각 호실별 계약자에게 호실의 임대차 알선 및 임대수익률 확약을 하지 않으므로 향후 계약자는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은 설계변경, 공부정리 절차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상호 정산을 요구 할 수 없음.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세대내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통신단자함 선반의 배치에 따라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사업주체의 분양일정 및 운영사정에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사전 동의 또는 안내 없이 철거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본 세대 및 호실의 계약면적 외의 사업계획 구역 내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전유하여 사용 할 수 없음.
- 분양 홍보자료 등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변경 인·허가 포함)내용대로 시공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견본주택 등에 표현된 모형, CG, 카달로그, 안내지 등의 이미지 등에 표현된 각 세대별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지장물, 기둥, 조경, 미술장식품, 소화전, 우·오수배관, 한전 인입박스 등)의 표현은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는 개략적 이미지 및 모형 제작물이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 전 건축허가 변경 도서를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향후 변경, 추가, 설치 등의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 인쇄물(카달로그 등),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CG 및 이미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주체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문제는 사업주체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계획 구역 내 출입구 및 도로 등은 각 시설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 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 구획은 불가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도서에 준하며,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영업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 후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행사, 위탁사,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관청의 일정에 따라 각 도로의 개발 및 개통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연, 변경(도로폭, 위치, 레벨 등)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입주시기와 도시계획도로의 개통 시기는 상이하므로 해당관청 문의바람]
- 사업승인 및 본 공사 진행 후 준공시까지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무늬, 형태, 색상, 두께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층별 라인별로 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음.
- 대지면적은 예정도에 의한 현황측량결과로 산출된 것이며,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 측량 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정산은 없음.
- **단지 외부 교통시설물과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음.**
- **사업부지와 관련한 각종평가(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초등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인근학교 분산배치 우선 검토 등으로 교육부의 학교설립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설립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1개 층 전체를 분양 받아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 공용부분의 귀속 사용에 대해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1항에 의거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단, 호실 통합은 관계법령(소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층 이외의 계약자 또는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전에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호실에 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세대 호실 면적을 분할하여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본 호실 계약면적 외의 사업계획 구역 내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실의 타입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호실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타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포함)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및 개발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 해당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함.
- 구역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영노선, 시기, 관리 등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기관) 문의 바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될 수 있음.
- 수자인라이프(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내 고정 IP 회선이 연결 되어야 하며, 고정IP회선은 입주자 대표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인터넷을 연결하여야함.
- 수자인라이프(스마트 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로 플랫폼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승인 후 사용 가능함.
- 수자인라이프(스마트 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로 인터넷 통신망(와이파이 환경 구축)이 필요함. (입주자 별도 구축)
- 수자인라이프(스마트 홈 서비스)는 준공시점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3년 후부터 신청세대에 한하여 유상으로 전환되며, 요금 및 세부사항은 추후 세대별로 공지될 예정임.
- 수자인라이프(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 (조명, 난방, 환기, 쿡탑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 (소비자가 별도구매)는 수자인 App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KT, SKT, LGU+) 혹은 가전사의 App 등을 통해 구현 가능함. (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음.)
- 수자인라이프(스마트 홈 서비스)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협력사 및 파트너사)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를 따름.
- 수자인라이프(스마트 홈 서비스) App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수자인라이프(스마트 홈 서비스) App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수자인라이프(스마트 홈 서비스) App 연계되는 가전사 App 통해 생활가전에 대해서 연동가능하며, 각 제품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각사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가전사 및 이동통신사 App 연동은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연동이 불가 할 수 있음.
- 각 가전사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가전사 App에 제품을 등록 및 수자인 스마트 홈 App 연동 등의 사전 등록과정이 필요함.
- 이동통신사의 App을 통해 IoT 가전을 연동 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 (LG전자, 삼성전자)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IoT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 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각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 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설계관련 및 기타유의사항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북측 및 북서측 으로는 40M도로, 남서측 으로는 25M도로, 남측으로는 15M도로가 있으며 차량은 남측 15M도로를 통해 단지 출입이 가능함.
- 차량 진출입구의 추가적인 개설은 불가능 하며 이로 인한 설계 변경 등의 사항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지하1층과 지상1층, 지상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근린생활 이용으로 인한 소음, 악취, 매연, 조망권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남동측 으로는 최대 45층 규모의 아파트와 최대 27층의 **오피스텔**이 혼합된 '한화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주상복합이 입주완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 에서는 일조, 채광, 조망, 환기 등에 있어 생활권침해가 발생함. 계약자께서는 해당부지의 상세 계획을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람.
- 공급안내문,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

이가있을수 있음.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분양 홍보자료에는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내 주변의 건축물 (주상복합 및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이 자세히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주변 현황을 확인하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 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 내·외, 공용 부분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변경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및 그 외 타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부대 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변경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주동 기초 일부 구간 구조, 기초 및 전이층의 구조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조경석쌓기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건축심의 내용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동주택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홈네트워크 AA등급(예비인증완료)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하며, 오피스텔은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홈네트워크 A등급기준 (미인증조건)으로 설계를 진행함.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특성상 사업부지 내 도로와 인도는 일부 경사진 도로와 계단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음.
-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 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101동, 102동 옥상에는 소화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2의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2등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구축 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협의하여,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 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바람.
(이동통신 설비설치 예정위치: 중계기설치위치: 101,2동 지하2층 EPS/TPS, 101,2동 지상6층 EPS/TPS 2개소, 102동 지상17층 EPS/TPS 2개소, 101동 지상18층 EPS/TPS 1개소, 102동 지상28층 EPS/TPS 2개소, 101동 지상30층 EPS/TPS, 102동 지상39층 EPS/TPS 2개소 101동 지상42층 EPS/TPS)
- 단지 북서측 조경구간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 단지 남동측 조경구간에 발전기실 DA가 위치하여, 소음, 전동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관련법에 의거 각동 지상24층에 피난안전구역(제연휀룸 포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하부 인접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악취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건물내부 화재발생시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한 피난계단, 피난용승강기, 유도등 등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계획되어 있으나 피난층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각 동별 최상층 옥상광장에 헬기를 통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인명 구조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 각 동 피난안전구역에 소화펌프실 및 제연휀룸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피난 안전구역은 입주자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동별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먼 거리에 주차되어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 설치 위치(개수)는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및 기계/전기실 등은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 현장은 단지내 도로가 없으며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이 불가능하며 주상복합 현장 특성상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조경식재 대상,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거주군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계단의 형태 및 위치,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로비/복도/엘리베이터 홀 등의 단면계획(천장마감, 천장고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안전매트 구간은 준공 시 변경 가능하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휴게공간, 어린이 놀이터, 펫가든, 캠핑가든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2층 옥외에는 펫가든이 있으며 이용객 및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조망, 기타 동물로 인한 알러지 및 벌레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2층 옥외 101동과 경로당 사이에는 캠핑가든이 있으며 이용객으로 인한 소음, 악취, 조망권 침해, 매연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인접세대 계약자께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2층 옥외 102동 좌측에는 플레이가든(어린이놀이터) 및 그라스가든이 있으며 인접 세대에서는 이로 인한 소음 악취, 조망권 침해,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접 세대 계약자께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101동 하부 코어 좌측, 101동 좌측 근린생활시설 옥상, 101동 북측 2층 옥상 지붕, 102동 남측 코아 우측에는 옥외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진동, 소음, 매연, 악취, 바람 및 조망권 차단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 계약자께서 해당부위의 계획을 상세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101동 좌측 근린생활시설 북동측, 101동 북동측, 101동 서측, 101동 동측, 101동 남동측 102동 남동측 및 남측에는 지하층 및 기계전기실의 환기를 위한 DA가 계획되어 있음. 인접 세대 및 보행자는 이로 인한 진동, 소음, 매연, 악취, 바람 및 조망권 차단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 세대 계약자께서 해당 부위의 계획을 상세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 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각 엘리베이터 내부 디자인은 수자인 전용 표준 디자인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공동주택, 오피스텔 표준디자인과 근린생활시설 표준디자인은 별도로 적용 예정임.)
-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지상1층에, 지하 2~3층에는 공동주택 주차, 지하 4층에는 오피스텔 주차가 계획됨.
- **지하 1층 주차출입구의 높이는 약 2.7m이며 주차장의 차로 폭은 약 6.0M임 (비상시 소방차 및 사다리차 진입은 가능하나 대형화물차, 사다리차등의 진입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는 불가능함)**
-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와 1층 주차장(근생전용)의 합산대수로 각 동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 지하2층 ~지하 4층 주차장의 층고는 법적 기준 내에서 착공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장애인 주차, 확장형 주차, 경형 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무인 택배시스템은 지상 1층에 설치예정이며, 이용을 위한 동선은 위치에 따라 동별로 길어질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물 수취함의 위치, 개소,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층 필로티의 보행자 진출입로는 동 출입구 형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각종 시설물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창고, 자전거 보관소 등) 및 마감재 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동측 공공 조경구간에 발전기실 D.A가 위치하여,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모형,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 및 주변건물 등)은 이미지로서, 준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변의 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단지 경계선 외부공간 [서측, 북서측 40M도로, 남서측 25M도로, 남동측 15M 도로, 서측 10M 공공조경], 주변도로(도로, 자전거, 보행자)]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입주 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공사 (ex_태양광전지판)설비의 구조, 용량, 시공여부 및 형태는 미관, 에너지 효율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 101,102동 및 경로당 지붕층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 집광판 포함)에 의해 일부 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 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 집광판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지붕층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공동주택 공용부 적용. 오피스텔용 태양광시스템은 미적용됨)
- 당 단지는 지하4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1층은 일부 외부로 노출된 구조임. 또한 외부 및 지상층을 통하여 지하1층 및 지상 1층으로 진입하는 구조임. 단지 주변 레벨 및 접근 레벨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남동측 1F 레벨에 보행, 차량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서측, 북동측, 남서측에 근린생활시설 B1 레벨로 근생 전용 보행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해당 보행 출입 동선상의 레벨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남동측 차량 주출입구 전면에는 입주완료 된 한화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의 차량 주출입구가 있어 해당 시설로 인한 빛, 소음, 매연, 악취, 차량 및 보행 혼잡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현장의 건축현황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남서측 주출입구는 도로와 단지 레벨차이로 인해 계단 및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된 공개공지가 25M 도로변에 설치되어 102동 저층부 세대는 공개공지로 인한 소음 및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완충녹지, 주변도로 등은 인허가 관청 및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조경 및 레벨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서측, 남서측), 40M, 25M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세대에서는 소음 및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입주민이 근린생활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세대 인접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나 지하1층 및 지상1층에서 근생 공용부위로 접근하는 보행자 동선이 있음.
- 준공 시 안전매트 구간 계획에 의하여 조경 식재의 종류/위치, 보도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시 토지면적은 확정 측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단지 내에 별도 구획(근생주변 옥외 주차장)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냄새 등으로 인한 주변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근생의 형태(높이 및 크기, 면적 등)는 고시된 도로선형에 준하여 설계된 것으로, 추후 근생형태 및 주변현황은 분양 자료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지상1층에 설치되어 있고 주차로 인한 소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칸막이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건식고정 벽체임.
- 액체방수 시공시 액체방수 두께는 준공도면에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 8 : 2 0 1 6"에 따라하여 액체방수 두께 기준 4mm를 충족하여 시공함.
- 세대 전용부 및 공용부 타일 시공시 타일 뒷채움 기준 80%를 충족하여 시공함.
- 단지 차량출입구 차단기 위치 및 진출입 선형, 각 진입구 및 보행자 도로의 레벨 및 근린생활시설의 옥외 조경 구간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음. 온수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수분양자의 계약세대 상하좌우 세대 중 마이너스 옵션 선택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이너스 옵션세대가 없을 경우와 다른 단열, 마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면적, 마감 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지구단위지침/건축심의의견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로 계획하였음.
- 동측 공공조경 구간은 조경 및 식재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진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단지의 마을명, 동표기 등은 지구단위 지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름.
- 지구단위 지침/건축심의 의견에 따라 보도 연접형 전면 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로 계획하였음.
- 단지 남동측 공개공지 조경구간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은 완속 8대(공동주택용 완속3대, 오피스텔용 완속3대, 근생용 2대), 이동형콘센트 17EA를 지하주차장 내에 설치하며, 입주 후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요금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당 현장은 항공장애등 설치대상 현장으로 101동, 102동 10층, 24층, 37층, 옥상지붕층에 중광도,고광도 항공장애등(주간표지포함)이 설치되며, 일부 세대에서는 눈부심 및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디자인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공사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있는 배선기구 (콘센트, 스위치류)는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석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에는 대피공간이 없으며, 하향식 피난구 및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있음. 3층 세대는 하부 피트 층 또는 완강기를 통해 피난 가능함.
- 본 사업은 준 초고층 현장으로 전 세대에 소방대 진입창이 설치되며 3층 세대부터 20층 세대까지 소방대 진입창 표식이 부착됨. (소방대 진입창은 의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4B 타입 101동 3호라인은 사다리차의 접안거리로 인해 하향식 피난구 및 발코니1 측면이 아닌 침실1 측면에 3층에 20층까지 고정창 형태의 소방대 진입창이 설치됨.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라믹타일의 경우 재료와 패턴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되는 것이 불가함.
- 본 공사시 거실 아트월(디자인월)의 경우 패턴의 특성상 제품간 서로 패턴이 상이할 수 있으며 나누기 부분에 측면이 노출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 확장형의 거실 아트월(디자인월)은 커텐박스 라인에 맞춰 시공되며, 커텐박스 라인의 입면에는 벽지가 시공됨
- 본공사시 거실 아트월 디자인월 시공시 별도의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루의 코어재(바디재)는 변경될 수 있음.
- 다음 각목의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가.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나.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다.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 또는 세라믹이 시공되지 않음.
  라.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마.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난방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온수분배기 가림판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공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씽크대 하부 및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환기장치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임.
- 다용도실(세탁실)은 별도의 천장 마감이 없으며,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84B타입의 실외기실 도어의 컬러가 84A,C타입과 상이하게 적용됨(84A,C 타입 : 거실벽지 유사 도장컬러 적용)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주방가구의 상부장이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 다용도실 배수구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형태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침실1 도어에는 모티스타입, 그 외 도어는 프라이버시 타입의 도어락이 설치되며, 도어 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음.
-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등 문에 한해 고정부 모서리 1면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공사 시 방화문 프레임 두께는 달라 질 수 있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다용도실,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견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상이할 수 있음.)
- 다용도실의 바닥 단차는 실 시공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욕실천정 내부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공공조경,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주변 공동주택 단지 및 현황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 선택에 의해 발코니 확장, 비확장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실 공사시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건물외부, 엘리베이터 홀/복도 주현관, 지하주차장, 지하층 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없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실외기실은 우수설비 설치됨)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높이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팜플렛 및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기, 스위치, 통합 일괄소등 스위치, 전열교환기, 홈네트워크 및 수전+금구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세대의 마감재 리스트 중 미표기 사항, 외부 환경디자인 등 카다로그에 미표기 사항은 사업승인 변경 최종도서에 따라 시공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변경, 미설치, 추가설치 될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다용도실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고,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거실, 발코니, 다용도실, 주방, 욕실, 현관 등의 타일류는 줄눈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음.
- 84A타입의 현관가구(신발장, 창고) 마감은 84B 현관창고 마감재로 적용됨
- 84B타입은 발코니 확장시 알파룸이 제공되며 네트워크 스위치 및 콘센트, 통신수구가 설치됩니다.
- 84B타입은 발코니 확장시 알파룸에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이 적용되며, 발코니 비확장시에는 드레스룸 공간(벽, 도어가 제공되지 않음)이 조성되며 조명 사양이 변경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침실2,3 벽체 통합형 옵션 선택시 콘센트 설치위치 분리형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콘센트 및 통신수구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유상옵션 간접조명(주방,거실 우물천정)선택에 따라 스위치 회로수가 변경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 설치되는 곳의 위치에 따라 조명기구 설치위치가 변경 될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또는 단창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카리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 및 확장 유상옵션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현장은 준 초고층 건축물로 공용홀, 복도 등에서 연돌효과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바람, 바람소리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내외부 압력 차이로 도어 및 창호 개폐가 어려울 수 있음
- 당 현장 84A,B,C 타입은 에어컨 매립배관이 전실(거실,침실1,2,3)에 설치 되는 현장으로, 옵션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매립배관 설치 개소가 달라질 수 있음(옵션 시스템에어컨 1안 선택시 침실1, 거실 에어컨 매립배관 제외/ 2안 선택시 전실 제외.)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시 현관중문, 주방 팬트리, 인덕션, 전기오븐, 붙박이장, 욕실 스타일업 옵션을 제외한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이 불가함.
- 발코니에 설치 전동빨래건조대는 등기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발코니 등과 스위치(배관배선 포함)는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각 동 라인별로 실내폭 치수가 상이하니 동평면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여주시기 바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변경승인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실외기실, 앞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내부 폭은 같은 타입이더라도, 중간세대 + 측세대 + 꺾인세대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 법적인 오차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타일은 패턴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시공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측세대, 중간세대에 위치에 따라 벽체 공유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의 안목칫수 다를 수 있으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제54조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할 예정임.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 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침대,테이블,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월패드 내 표현되는 GUI 디자인은 예시로 표현된 사항이므로 본 제품 설치시 변경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스위치,콘센트), 월패드, 전자식 스위치류, 디지털도어락, 현관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배선기구(스위치,콘센트)는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전등회로수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확장 및 일부 유상옵션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세대 가구 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 문구는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 공사시 부착되지 않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 제품은 견본주택용의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실제 유상옵션 제품과는 상이하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확장형 선택시 유상 옵션사항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임)
- 침실1(안방)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외측에 면한 창호만 방충망 설치)
- 욕실2(부부욕실) 바닥 배수구 위치는 샤워부스 안에만 설치됨(세면대하부에는 없음)
- 욕실2(부부욕실) 샤워부스 하부는 바닥과 밀착되지 않으며, 샤워시 안에서 밖으로 물이 흐를 수 있음.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를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 형태 (도로 및 공원, 연결녹지, 주변상황 등)은 실시계획인가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모형/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서측, 남서측 25M 도로 건너편으로는 준주거부지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시설 이용자 및 차량으로 인한 소음, 악취, 조망, 일조, 빛공해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계약자께서는 해당부지의 상세 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북측, 동측, 남측 으로는 세병공원과 세병호가 있음. 세병공원의 조경시설물로 인한 해충, 소음, 악취, 일조, 조망권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병호의 유수로 (유수량은 계절, 기후, 지역적인 조건 및 지자체 공사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호수의 특성상 해충 및 악취 등 환경권의 침해가 있을수 있음) 세병호 주변으로는 운동시설 및 공원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 프라버시 및 환경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인접 세대 입주자께서는 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북동측에는 폭 10M 규모의 공공조경이 설치되면 공공조경으로 인한 충, 소음, 악취, 일조, 조망권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북서측 40M 도로 건너편으로는 근린공원과 유수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해충, 소음, 악취, 일조, 조망권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수량은 계절, 기후, 지역적인 조건 및 지자체 공사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호수의 특성상 해충 및 악취등 환경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근린공원 이용객으로 인한 소음, 프라버시 및 환경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인접 세대 입주자께서는 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당 사업지는 동서남북으로 인접한 부지의 조건에 따라 계획고가 상이하며 이는 공사여건 및 주변 현황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남동측에는 한화 포레나 전주에코시티가 입주 완료 되었으며 해당 건축물은 아파트 최고 45층 오피스텔 최고 27층 건축물로 구성되어 저층 인접 및 해당 방향세대는 일조,채광, 조망, 환기, 등 여러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지 현황과 당 현장의 건축 계획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주변 공공조경 및 40M 도로, 북측, 동측, 남측 세병공원 및 세병호 (레벨 및 식재계획은 수자원공사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가 있으며, (사업시행사 및 인허가 관청의 개발계획일정에 따라 준공시기 및 개발 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주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 현황은 인허가 관청 및 해당 사업자의 사업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상복합 건물로서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 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이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련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플레이가든(어린이놀이터), 그라스가든, 펫가든, 캠핑가든, 부대복리시설, D/A(설비환기구, 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보관소, 관리시설, 주차램프,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 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음.
- 주상복합 건축물의 특성상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당 현장 내 인접동, 인접 건축물 및 주변 동으로 인한 조망, 일조, 채광, 환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세대 계약자께서는 해당 건축 계획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으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에는 우수 저류조(101동 서측 지하 4층), 오수펌프실(102동 서측 지하2층),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발생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 및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 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계획은 시공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 (재활용 분리수거함+ 생활폐기물+ 음식물수거함)는 다음과 같음. 인접한 세대는 설치로 인해 환경권(시야간섭, 악취 등)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오피스텔 및 근생용 1개소 (지하1층 지하주차장 램프 측면)
  - 공동주택용 분리수거 2개소 쓰레기 보관함 1개소 (지하1층 101동 남동측, 102동 북동측)
-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악취, 소음, 해충 및 쓰레기 비산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입주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자전거보관소는 지하 1층 주차장 총 114대 설치예정이며, 세부 설치 위치 및 위치별 개소수는 실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설치되는 세대와 인접하여 환경권 침해(시야간섭 및 소음)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하부 26대, 경로당 하부 56대, 102동 하부 32대)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옥탑, 지붕, 외벽등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공청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음.
- 101동, 102동 사이에는 플레이가든(어린이놀이터)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101동 경로당 사이에는 캠핑가든이 있어 이로 인해 인접한세대는 소음, 악취, 매연, 시야차단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주변세대에 소음 및 빛 공해,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관청의 일정에 따라 각 도로의 개발 및 개통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연, 변경(도로폭, 위치, 레벨 등)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입주시기와 도시계획도로의 개통 시기는 상이하므로 해당관청에 문의바람]
-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선 외부공간[완충녹지, 세병공원, 세병호, 공개공지, 공공조경, 근린공원, 유수지, 보행자도로, 주변 공동주택용지, 주변도로(도로, 자전거, 보행자)]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조경 및 토목옹벽의 "형태 및 색상,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세병공원 및 북서측 40M도로, 남측면 25M도로, 남동측면 15M도로와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101동, 102동, 경로당지붕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 집광판 포함)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집광판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전기실 D.A는 101동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조경 주변 및 경로당 하부 에 위치하여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시설물은 전주시 및 에코시티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생과 인접한 세대에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외부환경 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모형 및 홍보물(CG 등) 에 표현된 주요 마감, 신재생에너지설비, 환기구(DA 등), 실외기 설치 예정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인허가, 현장여건, 용량계산 결과 등에 따라 위치, 수량, 마감재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실 시공시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주요 마감재료 및 색상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대 주동은 수성페인트로 시공됨.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입면은 석재, 석재뿜칠, 수성 페인트 등 으로 시공되며 디자인, 부위별 주요 마감 등 세부 사항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오피스텔의 경우 배연창 설치 의무로 인하여 실4에 배연창 설비가 설치됨. 본 사업지의 입면에 대한 당해 사실을 인지하며 이러한 입면 차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입면은 석재, 수성페인트 및 석재뿜칠로 시공되며 디자인 등 세부 사항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동의 입면 줄눈계획은 추후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지붕 층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 집광판 포함)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 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 집광판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피트층 포함 지상2층, 피트층 총 2개층)는 석재 및 뿜칠 수성페인트, 필로티 내부 공간은 수성페인트 및 석재뿜칠, 고층부는 수성페인트, 외부 노출 옹벽 등은 수성 페인트 및 석재뿜칠로 마감.
- 옥상조경 식재, 형태, 면적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옥상구조물 및 옥상 경관조명의 형태는 실시공시 디자인 및 경관 및 구조물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조경(옥상조경 포함)관련 유지관리공사의 시행주체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 시설명, 동표기 등은 지구단위 지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유리, 안전난간 등은 성능개선, 안전성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 현장은 일반적인 단지형 아파트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형태 또는 특화된 형태의 문주가 설치되지 않으며 당해 현장에 설치되는 문주(사업지 남측 15M도로변 차량 출입구 상부 구조물을 말함)의 형태는 실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 당 사업지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은 지상 2층 실내에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경로당이 설치되며 옥외에 캠핑가든, 플레이가든(어린이놀이터), 그라스가든 이 2층 옥외에 설치됨.**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 복도폭 등의 세부 치수는 실시설계 및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지구단위지침)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하부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102동 서측에는 경로당이 위치함.

■ 부대 ·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13항, 14항, 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7조에 의거함.)

부대시설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지상2층 • MDF실 : 지상2층 방재실 : 지상 1층, • 전기실/기계실: 지하2층~4층, • 경비실 : 지상1층 • 자전거보관소 : 지상1층 • 용역원휴게실 : 지하2층, • 쓰레기분리수거장 : 지하1층 • 전기자동차 충천시설 : 지상1층~지하4층	• 어린이놀이터(플레이가든), 캠핑가든, 그라스 가든, 펫가든 : 옥외 2층 • 경로당, 작은도서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 지상2층

■ 학교관련 유의사항

• 당 사업에 따른 인근학교 학생배치여건, 학생유입 규모, 공동주택 분양 공고 상황,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심사 결과 등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변경되거나 설립되지 못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설립 이전까지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학생배치가 가능한 초등학교에 배치(1.5km 이상 배치 가능)

※ 제3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현재 에코시티 내 학생이 급증하고 있어 주상3복합 유입 학생은 인근학교 배치가 어려울 수 있음

• 중학생은 화정중학교를 포함하여 전주시 중학교 4학교군 내 인근 중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함.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고등학교 설립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주변환경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음.(필히 해당 개발사업 주체 문의,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모형 및 자료에 표기된 도로 폭은 도시계획선 및 교통영향평가 기준의 도로 폭이며 현황 도로 폭은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바람.

• 단지의 차량 주출입구와 차량 부출입구가 교통량에 따라 진출입시 교통 혼잡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주택분양 및 거래(입주)시 안전 관련 정보 제공

분야	법적 의무사항	추가 및 보완 제공내용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1.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2.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
풍수해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배수펌프 설치
지진	내진설계	건축구조설계기준 KDS41 00 00
방범	CCTV 설치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1층 홀 및 최상층에 카메라 설치
장애인 안전	장애인 이동통로	출입구 경사로, 점자블럭
어린이 안전	놀이터 안전 등급	안전인증검사에 통과된 놀이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낙하에 안전한 두께의 탄성포장재 사용
노약자 안전	보도블럭 미끄럼방지	안전한 보행성 확보를 위해 표면가공을 통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포장재 사용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1	Ⅶ-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Ⅶ-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 분	기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 목	1	배선	차량통제기
	2	예비배관	욕실폰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일괄소등제어
	4	통신배관실(TPS)	디지털도어록
	5	단지서버실	엘리베이터호출 연동제어
	6	폐쇄회로TV장비	현관도어카메라
	7	가스밸브 제어기	무인택배시스템
	8	조명 제어기	대기전력차단장치
	9	난방 제어기	환기장치제어
	10	현관방범 감지기	-
	11	주동현관 통제기	-
	12	원격검침 전송장치	-

IX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6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중 운동시설은 피트니스 1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 총 2개소가 있음.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내 모형도 및 CG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하자여부는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각 공정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시공상 이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호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 3항에 의거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 축 물 명	전주에코시티 주상3BL 주거복합	인 증 번 호	2022-134
건 축 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인 증 기 관	한 국 부 동 산 원
준 공 (예 정) 일	2026.07.31.	유 효 기 간	2022.05.03.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5	인증 등급	
층 수	지하4층, 지상48층	인 증 등 급	일반(그린4등급)
연 면 적	77,791.1254㎡ (평가 연면적: 48,170.3730㎡)	인 증 기 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1.11.01.))
건 축 물 용 도	공동주택		
설 계 자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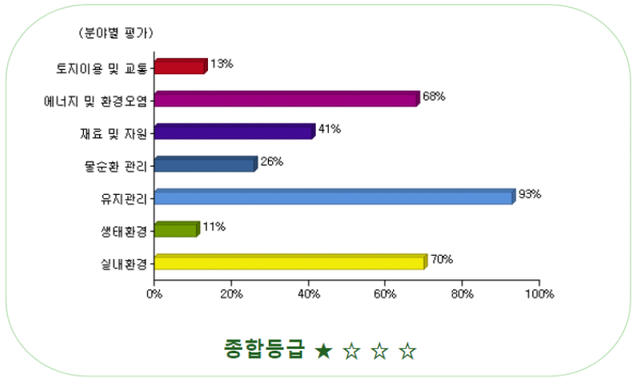

종합등급 ★ ☆ ☆ ☆

2022년 05월 03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전주에코시티 주상3BL 주거복합
2. 신 청 자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3.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5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토·성토량(땅깎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5월 03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전주에코시티 주상3BL 주거복합	인증번호	: 22-주-에-1++-0018
준공연도	:	20251201	평가자	: 김태완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5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층 수	:	지하4층 / 지상48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77951.7704(㎡)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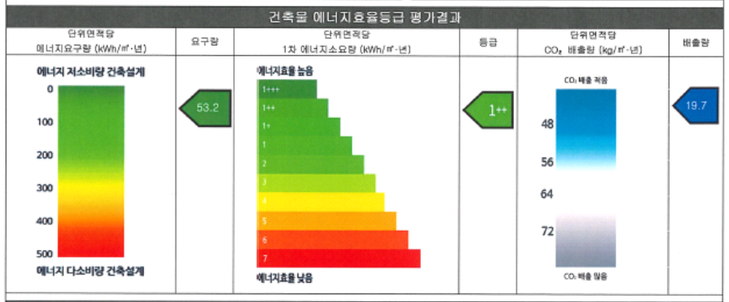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11.4	30.5	24.3	6.4
급탕	30.7	34.1	25.3	7.0
조명	11.1	9.1	25.1	4.3
환기		4.3	11.9	2.0
합계	53.2	78.0	86.6	19.7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됨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 년 04 월 22 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원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분양가 심사결과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5,537,599,980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22,461,402,413	공사비	기계 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830,494,155
		기간이자	-			용접공사	200,907,166			난방설비공사	1,238,148,811
		필요적 경비	745,907,247			조적공사	1,068,195,366			가스설비공사	650,612,158
		그 밖의 비용	1,302,476,624			미장공사	2,118,285,725			자동제어설비공사	746,393,481
		계[①]	17,585,983,851			단열공사	719,527,988			특수설비공사	1,107,909,573
공사비	토목	토공사	1,089,220,534			방수·방습공사	1,082,796,177			공조설비공사	1,658,829,800
		흙막이공사비	5,427,644,700			목공사	2,649,755,262		그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4,270,445,333
		비탈면보호공사	96,949,388			가구공사	1,682,013,479			정보통신공사	1,157,552,332
		옹벽공사	165,865,218			금속공사	1,053,594,554			소방설비공사	2,910,233,738
		석축공사	168,201,348			지붕 및 홈통공사	551,326,640			승강기공사	1,512,060,034
		우수·오수공사	181,050,062			창호공사	1,701,286,550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3,748,820,808
		공동구 공사	93,445,193			유리공사	1,147,347,649			이윤	3,621,360,9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07,578,779			타일공사	1,325,169,647		계[②]		81,044,121,243
		도로포장공사	163,529,088			돌공사	1,100,609,167	간접비	설계비		2,088,900,000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96,949,388			도장공사	1,311,736,901		감리비		3,965,500,000
		정화조시설공사	78,844,382			도배공사	950,804,842		일반분양시설 경비		461,026,515
		조경공사	502,851,946			수장공사	1,109,077,638		분담금 및 부담금		245,880,808
		부대시설공사	319,465,755			주방용구공사	905,834,342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1,408,686,289			잡공사	430,081,502		기타 사업비성경비		1,383,079,545
		가시설물공사	475,694,437		기계 설비	급수설비 공사	662,876,840		계[③]		8,144,386,868
		지정 및 기초공사	1,252,749,622			급탕설비 공사	650,028,126	그밖의 비용[④]			9,572,671,038
		철골공사	372,028,676			오배수설비 공사	707,847,339	합계[①+②+③+④]			116,347,163,000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3항,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원,VAT포함]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등 필요적 경비	말뚝박기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택지와 관련된 경비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테리전트설비				분양보증 수수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친환경주택평가방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지하주차장 LED공사)	법정초과 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
						홈네트워크 공사	에에컨냉매 배관공사	초고속통신 특등급공사	기계환기 설비공사						
745,907,247	612,176,200	416,351,100	5,427,644,700	273,949,324	1,281,653,607	3,638,311,600	1,953,962,600	700,623,000	1,658,829,800	462,340,903	1,082,265,642	43,722,400	132,382,088	277,408,800	-
택지비 가산비 소계					건축비 가산비 소계										
7,476,028,571					11,231,500,440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	비고
건축/토목·기계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원	3,800,000,000	부가세별도
전기/통신/소방	주식회사 대화	1,330,000,000	
구조	더원구조 엔지니어링	35,000,00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 **보증서 발급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제 01292023-104-0000900 호	**81,442,97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 의무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관리형 토지신탁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리앤프로퍼티,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인 ㈜한양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리앤프로퍼티에게 있다
- 분양계약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본 관리사업부지(향후 준공예정인 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리앤프로퍼티와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사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수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및 유의사항과 광고 등을 통해 명기된 사업지 주변기반(예정)시설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기타 시행자의 사정 및 경제여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체 내지 철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리앤프로퍼티, 시행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시공사 ㈜한양에게 민·형사 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케이비부동산신탁㈜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수분양자)은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인 ㈜한양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등록업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23~25층)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129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2021-건축과-신축허가-5) 2021. 7. 30. 허가 완료

■ **사업관계자 현황**

구 분	시행 위탁사	시행 수탁사	시공사	비고
법 인 명	주식회사 리앤프로퍼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6, 휴하우징 4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23~25층	인천광역시남동구미래로14, 201호	
법인등록번호	210111-0167372	110111-1348237	110111-0144347	
사업자등록번호	519-86-02277	120-81-67944	110-81-14611	

분양관련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위치	홈페이지	비고
1644-1007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6, 휴하우징 2층	http://sujain-eco.co.kr	

■ 견본주택 방문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양수자인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